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315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

2025. 10.

복지문화위원회  
전문위원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5. 10. 23.
복지문화위원회

## 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고명욱 의원 등 6명
- 발의일자: 2025. 10. 2.(목)
- 회부일자: 2025. 10. 10.(금)
- 검토기간: 2025. 10. 10.(금) ~ 10. 17.(금)

## 2. 제정이유

- 체육시설 이용 시 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, 동시에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도모하며, 직장운동경기부의 전국대회 등 성과를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시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항목 신설 (안 별표 4)
- 나.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(안 별표 4)

## 4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3항에 따라 구에서 설치·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규정과 관련, 우리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에 대한 사용료 감면 및 그 외 필요한 경우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하여 공공체육시설 효율적인 운영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으로,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※ 우리구 직장운동경기부 현황

- 검도부: 11명(감독 1, 코치 1, 선수 9)
- 장애인 수영팀: 3명(감독 1, 선수 2)

# 관계법령

## □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제6조(생활체육시설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## □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4조의2(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)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 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~ 6. (생략)

7.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